

국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판례 분석 연구 : 정서적 학대 유형, 쟁점 사안 및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윤기혁*

수영구노인복지관,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n Analytical Study on Precedents of Emotional Child Abuse at Daycare Centers of Korea: Focusing on Emotional Abuse Type, Issues, and Preventive Measures

Ki-Hyok Youn *

Suyoung-gu Senior Welfare Cent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ong Myo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한 1심 판례 10건과 항소심 및 상고심 판례 4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유형은 폭행(손과 발로 머리, 얼굴, 엉덩이 등을 때림), 물건 던짐, 방치, 강제로 음식 먹이기, 손수건과 물티슈로 입 틀어막기, 식사 거르기, 무서운 영상 보여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어린이집, 정서적 학대, 판례, 정당행위, 양벌규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by analyzing court precedents related to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of Korea. For this, ten precedents of first trial and four precedents of appellate trial related to emotional abuse were analyzed in depth. In the results of study, there were diverse types of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such as assaulting(hitting head, face, and buttocks with hands and feet), throwing things, neglecting, forcefully feeding food, stopping mouth with handkerchief and wet tissue, skipping meals, and showing scary images. And the main issues of precedents included the matter of justifiable act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the matter of apply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Based on such results, the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were suggested.

Key Words : Daycare Center, Emotional Abuse, Precedent, Justifiable Act, Joint Penal Provision.

1. 서론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세계적인 교육학자인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이다. 하지만 근자에 아동학대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뉴스가 되었다. 정부는 점

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된 2000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Received 2017-10-11 Revised 2017-10-16 Accepted 2017-10-20 Published 2017-10-31

*Corresponding author : Ki-Hyok Youn (akqj1111@naver.com)

2015년 전국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36%,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8%로 증가하였다[1]. 그리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5년에 처음으로 79.8%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대리양육자인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1,189건으로 전체의 10.1%에 차지하고, 전년도(2014년) 745건 대비 59.6%나 증가하였다. 종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인 427건(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96건(24.9%), 초·중·고교직원 234건(19.7%), 유치원교직원 203건(1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는 성인(보호자를 포함)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또는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다른 학대 유형과는 달리 양육자에 의해 가해지는 공격적, 거부적, 폭력적인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비신체적인 학대 유형이다[4,5].

이러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자신의 정서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보인다[6-8]. 그리고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우 신체적 징후로는 신체발달 저하, 성장장애 및 언어장애, 원형탈모 등이 나타나고, 행동적 징후로는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과 극단 행동, 과잉 행동, 발달 지연, 자살 시도 등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난다[4].

이처럼 정서적 학대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신체적 학대를 주로 다루었다[9]. 아동학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범주의 신체적 학대에 주로 한정되어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거나, 아동학대의 포괄적인 범주 속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10]. 정서적 학대는 개념상 정의가 모호하고, 양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외관상의 피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11,12].

한편 국내에서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경찰에 고발되는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뺨을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도 불구속 입건했다[13]. 울산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2016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된 아동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52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14]. 이와 같이 신체적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사건으로 인한 범원의 판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을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육시설내 아동학대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어린이집에서 정서적학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경찰의 고발과 법원 판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학대자는 물론 운영자인 원장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지자체장의 행정처분에 의해 자격정지나 취소, 나아가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까지 이를 수 있다[15]. 또한 이러한 처벌의 여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소속 보육교직원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학대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분석코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판례연구를 채택한 것은 판례연구가 사회복지법의 실제 해석과 적용이 어떠하며, 이것이 지닌 사회복지부분의 함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16,17]. 그리고 국내에서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판례 연구는 5편 정도에 불과하고, 보육시설에서 정서적 학대를 중점적으로 다룬 판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15,18-21].

그리하여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 유형과 학대 이유, 주요 쟁점 사안을 토대로, 향후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문제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법원소송에 이른 학대 유형과 학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어린이집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Table 1. Fact Relation of the First Trial Precedents (Childcare teacher: Ct)

No.	Date of Adjudgment	Case No.	Defendant	Abuse Type	Court Judgment
1	2012.07.11.	Suwon District Court 2011godan5867, 2012godan478(combined)	Director	Emotional abuse	8months in prison
2	2012.12.11	Busan District Court 2012godan8493	Director	Emotional abuse	6months in prison (probation for a year)
3	2013.04.05.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2godan5290	Director	Physical/emotional abuse	One year in prison
4	2015.06.04.	Jeju District Court 2015godan134	Two Ct	Physical/emotional abuse	Fine 1million won (suspended sentence)
5	2015.06.11.	Ulsan District Court 2015godan325	Director	Physical/emotional abuse	1Y & 2M in prison
			Ct	Emotional abuse	Fine 4million won
6	2015.06.25.	Incheon District Court 2015godan612	Ct	Physical/emotional abuse	2years in prison
			Director	Joint penal provision	Fine 5million won
7	2015.10.28.	Changwon District Court 2015godan1116	Cook	Emotional abuse	4months in prison (probation for two years)
8	2016.01.22.	Chuncheon District Court 2015godan651	Ct	Emotional abuse	Fine 1.5million won
9	2016.10.06	Incheon District Court 2016godan3238, 2016godan5101(combined)	Director	Physical/emotional abuse	One year in prison, Fine 3million won
			Ct	Emotional abuse	6months in prison (probation for two years)
10	2017.02.10	Daegu District Court 2016godan6148	Director	Physical/emotional abuse	10months in prison (probation for two years)

2. 연구 방법

2.1 분석 방법 및 절차

판례분석은 법학적 견지에서 논리적 모순이 없고 법률적 체계를 해하지 않는 견지에서 심층적 내용분석을 해야 함에 매우 심도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다[17,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의 법원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 견해와 함께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여 정서적 학대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판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23].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판례연구의 분석방법은 국내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각 판례의 사실관계 분석과 내용분석, 주요 쟁점 사안 분석으로 구분하였다[17]. 그리고 각 판례의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선고일자, 사건번호, 피고, 학대 유형, 법원의 판단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2.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판례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전국의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육시설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였다[17,23]. 그리고 보다 많은 판례를 확보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판례들을 조사하였다 [15][18-21]. 그리하여 총 14건의 판례를 확인하였다.

3. 판례의 사실관계 및 내용 분석

3.1 분석 대상 판례

본 연구의 결과 분석 대상이 되는 1심 판례는 2012년도 2건, 2013년도 1건, 2015년도 4건, 2016년도 2건, 2017년도 1건으로 총 10건이다. 그리고 항소심 2건, 상고심 2건으로 총 14건이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다. 1심 판례의 사실관계는 Table 1, 항소심 및 상고심의 사실관계는 Table 2와 같다.

3.2 1심 판례의 사실 관계 및 내용 분석

3.2.1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867 및 2012고단 478(병합) (사례 1)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867: 피고인(원장)이 피해아동이 울어서 달랬으나 듣지 않았다고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고, 같은 해 7. 중순경 피해아동이 “TV를 끄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다며 나무주걱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불룩을 집어던져 맞추는

Table 2. Fact Relation of Appellate Trials (Childcare teacher: Ct).

No.	Date of Adjudgment	Case No.	Defendant	Cause for Filing	Court Judgment
1	2015.07.07.	Incheon District Court 2015godan754	Ct	Emotional abuse	9months in prison
			Director	Joint penal provision	Fine 5million won
	2016.02.05.	Incheon District Court 2015no2736	Ct	Emotional abuse added. Sentence increased	On year in prison
			Director	Final ruling of 1st trial	Fine 5million won
2	2017.08.07.	Goyang Branch of Uijeongbu District Court 2015no936	Ct	Physical abuse	Fine 5million won
			Director	Joint penal provision	Fine 1million won
	2016.05.04.	Uijeongbu District Court 2015no2173	Ct	Emotional abuse	Fine 5million won
			Director	Joint penal provision	Fine 1million won
3	2014.07.02.	Gimcheon Branch of Daegu District Court 2014godan149	Ct	Emotional abuse	Fine 2million won
			Director	Joint penal provision	Fine 2million won
	2015.04.23.	Daegu District Court 2014no2526	Ct	Appeal	Fine 2million won
			Director	Appeal	Innocence
	2016.05.12.	Supreme Court 2015do6781	Director	The prosecutor appealed that the sentence of acquittal for the director was unfair.	Dismissal of appeal
	2015.01.30.	Uijeongbu District Court 2014godan2594	Ct	Emotional abuse	Fine 3million won
Director			Emotional abuse	Fine 3million won	
2015.08.21.	2nd Investigation Division of Uijeongbu District Court 2015no492	Director	Dismissal of appeal	Fine 3million won	
2015.12.23.	Supreme Court 2015do13488	Director	Dismissal of appeal	Fine 3million won	

등 등 9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8개월 동안 다양한 학대를 하였다[32].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8: 피고인(원장)이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장난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는 등 5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개월 동안 다양한 학대를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체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24].

3.2.2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493(사례 2)

피고인(원장)은 피해아동이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식사지도를 한다며, 혼자 식당 밖 책상에 앉혀 놓고 먹지 않는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식사를 강요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재판부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25].

3.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290(사례 3)

피고인(원장)은 피해아동이 시끄럽게 운다며 입에 거스손수건을 물리는 등 어린이집 아동 7명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우유를 먹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설령 그것이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26].

3.2.4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4(사례 4)

피고인 A(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화장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밀어내듯이 차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보육교사)는 피해아동 뒤에서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로 세게 당겨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총 22회(피고인 A 15회, 피고인 B 7회)에 걸쳐 8명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선고를 유예하였다[27].

3.2.5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25(사례 5)

피고인 A(원장)는 2014.11. 일자불상 09:50경 피해아동이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셔츠, 레깅스 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다리를 묶은 다음 이불로 피해아동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그대로 두고(같은 날 15:00경까지) 정해진 간식과 점심을 주지 않는 등 총 3회에 걸쳐 학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던 중 피해아동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를 피해아동의 입 안에 강제로 넣고, 약 2-3시간 동안 두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운다는 이유로 바운서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벨트를 채우고, 이불로 피해아동들의 몸을 감싼 후 그대로 둔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 B(보육교사)는 거실에서 요리활동을 하려 했으나 피해아동들이 때를 쓰고 운다는 이유로, 불이 끄진 교실 안에 피해아동들만 약 1시간 동안 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들을 교실에 둔 사실이 있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과 80시간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B는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28].

3.2.6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2(사례 6)

피고인 A(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울동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바닥으로 밀어 주지않혔고, “울동하는 것 보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반대쪽을 보고 있으라고 지시하여 돌아앉게 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점심을 늦게까지 먹고 김치를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식판에 남겨놓은 김치를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수차례 강제로 떠 넣었으나 피해아동이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아동이 기어와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먹게 하는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 B(원장)는 피고인 A(보육교사)가 평소 보육과정에서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그로 인해 아동들이 피고인 A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시로 학부모와 아동 면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아동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아

동학대 행위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보육교사)는 징역 2년의 실형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B(원장)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29].

3.2.7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16(사례 7)

피고인(조리사)는 피해아동이 음식물을 남긴 식판을 들고 오자 남긴 음식을 다 먹으라며,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 있는 피해아동을 향해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입으로 가져갔다. 이에 피해아동이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 내자, 피고인은 바닥과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게 한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30].

3.2.8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51(사례 8)

피고인(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아동 옆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무서운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고, 이를 시청한 피해아동은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서 울음을 터뜨리게 한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31].

3.2.9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및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101(병합)(사례 9)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피고인 A(원장)는 다른 아동의 기저귀를 갈고 있던 중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옆에 다가와 귀찮게 한다며, 손으로 피해아동 이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3회 짓눌러 주지않히는 등 총 5회에 걸쳐 폭행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32].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101: 피고인 A(원장)는 피해아동이 손사래를 치고 울면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손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을 붙잡은 채 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는 등 총 4회에 걸쳐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 B(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뺨을 세게 때리고, 2회에 걸쳐 힘껏 내려 앉혀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원장)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고, 피고인 B(보육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다[32].

3.2.10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48(사례 10)

피고인(원장)은 피해아동이 방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 앞부분 흡입구를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약 3회 들이밀어 피해아동을 위협하는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33].

3.3 항소심 및 상고심 판례의 사실 관계 및 내용 분석

3.3.1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4 및 인천지방법원 2015노2736(사례 11)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4 사건: 피고인 A(보육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6명의 아동들에게 원아수첩을 던지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훈육의 목적이 없거나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과 의도가 내포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건전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에 해당 된다면 징역 9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21]. 그리고 피고인 B(원장)는 피고인 A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 74조 위반(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노2736)에서 피고인 A는 추가적으로 정서적 학대가 발견되었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오히려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피고인 B(원장)는 원심 판결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34].

3.3.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936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173(사례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936: 피고인 A(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때를 쓴다며,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 B(원장)는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학대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를 비롯한 보육교사들에게 별다른 훈육 지시 없이 외출을 하는 등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35].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벌금 500만원,

피고인 B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면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5노 2173)를 하였고,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서적 학대로 판결하였고, 형량은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하였다[36].

3.3.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고단149 및 대구지방법원 2014노2526(사례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49: 피고인 A(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피고인 A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밀치고,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탄 것을 했다는 이유로 좌측 팔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그리고 다른 아동들은 수업 준비 및 수업시간에 피고인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지만, 피해아동의 경우 모가 보육에 관하여 수차례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며, (화가 나) 피해아동만 다른 아동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피해아동을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서, 피해아동 혼자서 복도에서 쭈그린 채 밥을 먹게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이 낮잠을 안자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원장)는 피고인 A가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37].

피고인 A(보육교사)와 피고인 B(원장)는 원심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다.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2526)에서 피고인 A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고, 피고인 B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장의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2015도6781)에 상고하였지만 기각되었다[38,39].

3.3.4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594 및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노492(사례 14)

의정부지방법원 2104고단2594: 피고인 A(보육교사)는 아동들끼리 다툼이 있어 말렸는데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한차례 세계 때리고, 강압적으로 피해아동을 구석으로 잡아끄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 B(원장)는 재물잔치 준비

과정에서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빨간색 천으로 쓴 스펀지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세계 때리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40]. 피고인 B(원장)는 가볍게 머리를 한 대 친 것 일뿐, 아동을 학대할 의도로 한 행위가 결코 아님으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5노492), 대법원(2015도6781)에 상고하였지만 역시 기각되었다[41,42].

4. 연구결과 및 주요 쟁점 사항

4.1 연구 결과

4.1.1 정서적 학대의 유형

본 판례 연구 결과 정서적 학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례 1은 피해아동의 머리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나무주걱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불룩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때렸다. 사례 2는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사례 3은 입에 거즈 손수건을 물리고, 사례 4는 엉덩이 부분을 발로 밀어내듯이 차고,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로 세계 당겼다. 사례 5는 다리를 묶은 다음 이불로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점심을 굶기고, 물티슈를 입 안에 강제로 넣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벨트를 채우고 이불로 몸을 감싼 후 방치하고, 불이 끄진 교실 안에 피해아동들만 약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사례 6은 모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주저앉히고, 식판에 남겨놓은 김치를 입에 수차례 강제로 떠 넣고, 바닥에 떨어진 토사물을 기어와 손으로 집어 먹게 하였다. 사례 7은 바닥과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음식물을 먹게 하였고, 사례 8은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사례 9는 손으로 이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짓눌러 주저앉히고, 손으로 엉덩이와 손을 수회 때리고, 양손을 붙잡은 채 손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사례 10은 진공청소기 앞부분 흡입구를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위협하였고, 사례 11은 원아 수첩을 아동들에

게 던지거나 바닥에 던졌고, 사례 12는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왔다. 사례 13은 수업시간에 다른 아동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수저통도 복도로 던져 혼자서 복도에서 쭈그린 채 밥을 먹게 하였고,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사례 14는 머리를 손으로 세계 때리고 강압적으로 피해아동을 구석으로 잡아 끌고, 빨간색 천으로 쓴 스펀지로 머리를 세계 때렸다.

4.1.2 정서적 학대의 이유

본 판례 연구 결과 정서적 학대의 이유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례 1은 피해아동이 울어 달랬으나 듣지 않아서, 거짓말을 해서, 어린이집 장난감을 가져가서, 밥을 먹지 않아서, 사례 2는 편식이 심해서(식사지도를 한다며), 사례 3은 시끄럽게 울어서, 사례 4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대를 하였다. 사례 5는 계속 울어서(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로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때를 쓰고 울어서, 사례 6은 울동을 잘 따라하지 못해서, 점심을 늦게까지 먹고 김치를 먹지 않고 남겨서, 사례 7은 남긴 음식을 다 먹게 하기 위해서 학대를 하였다.

사례 9는 옆에 다가와 귀찮게 해서, 울면서 밥을 먹지 않아서, 사례 10은 울고 있어서, 사례 12는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때를 쓴다고 학대를 하였다. 사례 13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해서, 밥을 잘 먹지 않고 떠 갖을 해서, 학부모가 보육에 관하여 수차례 지적하는 등 까다로우서, 밥을 천천히 먹어서,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해서 학대를 하였다. 사례 14는 아동들끼리 다툼이 있어 말렸는데도 말을 안 듣고, 재롱잔치 준비과정에서 아동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학대를 하였다.

4.1.3 정서적 학대의 법원의 판단

본 판례 연구 결과 법원의 판결은 징역형, 징역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벌금형(선고유예) 등으로 나타났고, 부수적으로 아동학대 치료(예방)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정서적 학대는 징역 1년, 징역 9월, 징역 8월, 징역 6월(집유 1년), 징역 4월(집유 2년), 벌금 500만원, 벌금 4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대 징역 1년에서 최소 벌금 150만원까지 다양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중폭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징역 2년,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징역 1년(벌금 300만원), 징역 10월(집유 2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적용된 원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2 판례의 주요 쟁점 사항

4.2.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

어느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느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에 해당하여야 한다[23]. 위법성조각사유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위법성을 배제시켜주는 정당화사유로 형법에서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등이 해당된다[4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판례 중 사례 3, 사례 5, 사례 6, 사례 11, 사례 13, 사례 14의 피고인들은 고의가 아닌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이고, 비록 학대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사례 3의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례 5에서 재판부는 훈육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훈육 방법이 아동의 교육에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26]. 또한 훈육 방법과 정도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피고의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반됨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26].

사례 6과 사례 13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학대의 개념을 형법 보다 아동복지법에서 넓게 해석 하였다[29]. 이러한 맥락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연령과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다. 사례 11은 훈육의 목적이 없거나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과 의도가 내포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건전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26]. 사례 14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지만 폭행 경위나 폭행 부위와 정도,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즉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42].

재판부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존재하고, 훈육을 위한 건전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훈육이 정당화 되는 상황 즉,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훈육방법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과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훈육 방법 및 정도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4.2.2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본 연구 판례 중 사례 6,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의 피고인들에게 양벌규정이 적용이 되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와 함께 관리자 등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을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된다[44].

사례 6은 보육교사의 학대(징역 2년)로 인해 원장이 벌금 500만원을, 사례 11은 보육교사 학대(징역 1년)로 인해 원장이 벌금 500만원을, 사례 12는 보육교사 학대(벌금 500만원)로 인해 원장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례 13은 보육교사 학대(벌금 200만원)로 인해 원장이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리고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1]

이러한 맥락에서 사례 13의 경우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정기적 교사회의 실시,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게한 점, 3일에 한번씩 상담일지를 살펴보아 어린이집 소속 아동 학부모와의 교류를 확인한 점 등 원장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향후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 유형과 학대 이유, 쟁점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유형은 폭행(손과 발로 머리, 얼굴, 엉덩이 등을 때림), 물건 던짐, 방치, 강제로 음식 먹이기, 손수건과 물티슈로 입 틀어막기, 식사 거르기, 무서운 영상 보여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린이집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와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의 4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집 시설종사자(보육교사, 원장, 조리사 등)를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서적 학대의 세부적인 유형과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각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정서적

학대 사례들을 직접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나타났듯이 훈육과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한 작은 행위, 무심코 한 행위라도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사회상규상 위배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한다. 즉 훈육방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는 심각한 범법 행위로서, 미숙한 교육방법, 순간적인 행동과 실수로 인해서 범법자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집 시설종사자의 자질 함양과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 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의 주요한 이유로 시끄럽게 울어서, 우는 아동을 달랬으나 듣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거나 편식이 심해서 등 아동들의 일상적인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적절한 보육기술과 방법 등 종사자들의 자질이 함양 미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옆에 다가가 귀찮게 해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해서 등의 사유는 보육기술과 무관하게 교육자로서의 인성이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과 보수교육 시 인성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고, 보육협회와 어린이집에서는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양벌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장은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 적용은 보육교사가 학대를 하지 않도록 원장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와 역할을 해태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된 것이다[21]. 따라서 실제로 학대를 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원장에게도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함으로 향후 양벌규정은 점점 더 확대·강화될 것이다[21]. 본 연구 사례 13의 경우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갔지만 양벌규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학대 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인 회의와 교육, 대외적인 교육 참여, 학부모와의 소통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이점을 명심하고 평소에 학대 예방을 위해 꾸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교사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한 명의 교사가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까지 보호를 한다. 아동들이 울거나 다룰 때, 점심 식사를 할 때 등 동시 다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보육교사는 스트레스 발생과 함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소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Kontos & Stremmel는 물리적인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은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열악한 환경과 공간은 교사들에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심어 준다는 것이다[45,46]. 따라서 정부는 보육교사가 직무만족을 높이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관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지만, 향후에는 어린이집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의 관례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보다 다양한 관례 사례들을 통하여 학대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015 National Child Abuse Status Report*.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2014 National Child Abuse Status Report*.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2013 National Child Abuse Status Report*.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A casebook for child abuse prevention in care facilities*.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5] H. I. Kim, M. S. Shin & E. J. Ki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Adulthood Psychological Distress: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y on Emotional Awareness and Emotional Inhibi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8(4), 353-380.
- [6] B. A. Kolk & R. E. Fisler. (1994).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loss of self-regulation.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8(2), 145.
- [7] J. Kim, N. L. Talbot & D. Cicchetti. (2009). Childhood abuse and curren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shame. *Child abuse & neglect*, 33(6), 362-371.
- [8] J. E. Kwon & S. T. Hwang & S. B. Lee. (2012). Emotional Abuse, Neglect, and Personality Disorders: Mediating Role of Alexithymia.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75-91
- [9] S. H. Ha & M. S. Chang.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5(4), 833-852.
- [10] J. H. Jang. (2005).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of parent and child's uneasiness and an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yeong 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11] S. J. Kaplan, D. Pelcovitz & V. Labrume. (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A reviews of the past 10years. Part I: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0), 1214-1222. DOI : 10.1097/00004583-199910000-00009
- [12] E. S. Byun. (2015).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on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13] Yunhap news. (2017). 'slap and batten vomited food' ...4-year-old child Allegation of abuse arrest warrant Childcare teacher. Yunhap news.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161000053.HTML?from=search>
- [14] Gyeongsang Daily. (2017). *Child habitual abuse 52 times, childcare center principal is imprisoned 10 months*. Gyeongsang Daily.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033>
- [15] Y. I. Jang & H. C. Chung. (2017). A Study on a Non-Judicial Approach to Childcare Centers' Child Abuse Cases : Focused on an Autonomous Mediation System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04, 53-89.
- [16] J. K. Jung. (2006).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Social Welfare Law.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1), 395-423.
- [17] K. H. Youn & K. I. Park. (2016). A Study on Analysis of the Judicial Precedents on Accidents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Focus on the Type of Care Accidents, Disputes and Preventive Actions. *Social Welfare Policy*, 43(3), 85-112.
- [18] H. K. Yu. (2016). *A Study on the Laws and Cases Related to Child Abuse*. Seoul : ChildFund Korea.
- [19] W. S. Jang & M. S. Choi. (2016). An Analysis on Legal Cases Involv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stitutes in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 Research & Review*, 20(4), 490-515.
- [20] B, J. Jeon & K. H. Kim. (2017).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Its Implication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209-218.
- [21] B, J. Jeon & E. Y. Choi. (2017). Applic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Its Implications. *Police Science Institute*, 31(1), 119-150.
- [22] Y. J. Park & J. W. Kim. (2015). Study on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for protection of rights for the disabled: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7, 5-23
- [23] K. H. Youn. (2017).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cused on precedents after enforcement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Social Welfare Policy*, 44(3), 85-112.
- [24] Suwon District Court. (2011). *Suwon District Court*. Suwon : Suwon District Court.
- [25] Busan District Court. (2012). *Busan District Court*. Busan : Busan District Court.
- [26]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2).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oul :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27] Jeju District Court. (2015). *Jeju District Court*. Jeju : Jeju District Court.
- [28] Ulsan District Court. (2015). *Ulsan District Court*. Ulsan : Ulsan District Court.
- [29] Incheon District Court. (2015). *Incheon District Court*. Incheon : Incheon District Court.
- [30] Changwon District Court. (2015). *Changwon District Court*. Changwon : Changwon District Court.
- [31] Chuncheon District Court. (2015). *Chuncheon District Court*. Chuncheon : Chuncheon District Court.
- [32] Incheon District Court. (2016). *Incheon District Court*. Incheon : Incheon District Court.
- [33] Daegu District Court. (2016). *Daegu District Court*. Daegu : Daegu District Court.
- [34] Incheon District Court. (2015). *Incheon District Court*. Incheon : Incheon District Court.
- [35] Goyang Branch of Uijeongbu District Court. (2015). *Goyang Branch of Uijeongbu District Court*. Goyang : Goyang Branch of Uijeongbu District Court.
- [36] Uijeongbu District Court. (2015). *Uijeongbu District Court*. Uijeongbu : Uijeongbu District Court.
- [37] Gimcheon Branch of Daegu District Court. (2014). *Gimcheon Branch of Daegu District Court*. Gimcheon : Gimcheon Branch of Daegu District Court.
- [38] Daegu District Court. (2014). *Daegu District Court*. Daegu : Daegu District Court.
- [39] Supreme Court. (2015). *Supreme Court*. USA : Supreme Court.
- [40] Uijeongbu District Court. (2014). *Uijeongbu District Court*. Uijeongbu : Uijeongbu District Court.
- [41] Uijeongbu District Court. (2015). *Uijeongbu District Court*. Uijeongbu : Uijeongbu District Court.
- [42] Supreme Court. (2015). *Supreme Court*. USA : Supreme Court.
- [43] K. H. Lee. (2016). Type of Justificatory Facts in Criminal Law.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57(12), 29-40.
- [44] S. J. Oh. (2017). *A Study on Countermeasure for Elder Abuse Cri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ongguk University, Seoul.
- [45] S. Kontos & A. Stremmel. (1988). Caregivers' perceptions of working conditions in a child care environ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1), 77-90. DOI : 10.1016/0885-2006(88)90030-0
- [46] S. Y. Kim. (2017).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mpet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2), 11-16. DOI : 10.22156/cs4smb.2017.7.2.011

저 자 소 개

윤 기 혁(Ki-Hyok Youn)

[정회원]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전공 행정학석사
- 2015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05년 1월 ~ 2009년 2월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소장,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장 등.

- 2009년 3월 ~ 2013년 8월 : 노인요양원(상락정) 원장 및 부원장.
 - 2013년 9월 ~ 2014년 12월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2015년 1월 ~ 현재 : 수영구노인복지관 관장.
 - 2016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복지 분야 학대 판례연구, 위험관리, 서비스 질 관리, 융합.